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있어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,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9조제1호”를 “제29조제1호, 제40조의5제2항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	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·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, 제16조의2제2항, <u>제29조제1호</u> , 제41조제3항, 제41조의2제3항, 제70조의3제1항 · 제2항, 제70조의4제1항 및 제71조제2항 ·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9조제1호, 제40조의5제2항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0